

의안 번호	1508	【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. 11. 30.(금), 노세영 의원 외 7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11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12. 13.(목)

2. 제정이유

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인구정책사업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지원 및 전문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
- 라. 교육 및 홍보,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및 제11조)

4. 근거법규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·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및
-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등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일부 자구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 정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.

근거법규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